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54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신영대・임오경・안호영

홍기원 · 황 희 · 이학영

박수현 • 추미애 • 박지원

김용만 • 권칠승 • 박희승

정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와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 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 분야는 심각한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상기후로 인해 어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9조의3,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7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7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	
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35년 12월 31일</u>
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	
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u>.</u>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	
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	
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	
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③ (생 략)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 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u>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u>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②・③ (현행과 같음)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u>203</u>
5년 12월 31일
1. 2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

등: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 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 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 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u>2037년 1월 1일</u>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시발되게 6) ①
000513
<u>2035년</u> 12월 31일
<u>12 </u>
<u>036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u>
월 31일
·

② 2027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u>2037년 1월 1일</u>